

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20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6년 10월 25일
발 의 자 : 산업건설위원회
위원장 박해룡

1. 수정이유

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 수방단의 설치기준을 파주시
실정에 맞게 신설하여 파주시 수방단 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
하고자 함.

2. 수정주요골자

가. 안 제2조내지 안 제7조를 각각 제3조내지 제8조로 수정
하였음.

나. 제2조에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음.

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내지 안제7조를 제3조내지 제8조로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설치)①시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통·리 또는 자연부락별로 설치한다. 이 경우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·리 또는 자연부락의 규모에 따라 하나의 통·리에 2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2이상의 통·리 또는 자연부락을 합하여 하나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수방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수방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적절히 편성하되 필요 최소인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(생 략) (신 설)	제1조(목적)(개정안과 같음) 제2조(설치)①시장은관할구역내의 재 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통·리 또는 자연부락별로 설치한다. 이 경우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·리 또는 자 연부락의 규모에 따라 하나의 통· 리에 2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2이상의 통·리 또는 자연부락을 합하여 하나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. ②수방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 는 조직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 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수방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. ③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적절 히 편성하되 필요 최소인원으로 편 성하여야 한다.
제2조~제7조(생 략)	제3조~제8조(개정안 제2조~제7조 와 같음)